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11. 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0월 1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10월 12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76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2000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가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 및 완화로 심사결정 통보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현행 제4조제3항의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한 사항을 폐지함(안 제4조제3항)
 - 제5조(사육자의 의무)중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토록 규정된 사항을 '월 2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규정을 구체화함(안 제5조)
 - 제6조(가축사육자에 대한 감독) 제1항 중 '사육자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고'로 된 사항을 '1월 이내에 방역소독을 실시할 것을 명하고'로 개선기간 및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6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민창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가 「폐지 및 완화」토록 심사결정하여 개정을 추진한 내용중 사육사의 축사 청결을 위한 의무를 구체화한 내용은 개정이 필요하나 다만, 게시 의무 삭제는 재고할 필요성이 있음.

4. 수정안 요지

- 가. 수정이유
 -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게시하지 않는다면 각종 의무를 소홀히 할 여지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허가증을 게시하도록 함.
- 나. 주요골자
 - 제4조제3항을 현행대로 함.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00. 10. 30.
제 출 자 : 박정자위원외1인

1. 수정이유

-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게시하지 않는다면 각종 의무를 소홀히 할 여지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허가증을 게시하도록 함.

2. 주요골자

- 제4조제3항을 현행대로 규정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4조 제3항중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생략) ②(생략) 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 (안)	수정 (안)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u>유지</u>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사육자의 의무) <u>유지</u> 관리하기 위하여 월 2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가축의	제5조(개정안과 같음)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제3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받은 자가 제5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생략)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은 1월 이내에 방역소독을 실시 할 것을 ②(현행과 같음)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개정안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5
----------	-----

제출년월일 : 2000. 10. 12.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가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 및 「완화」로 심사결정(2000년 제7차) 통보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현행 제4조제3항의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한 사항을 폐지 함(안 제4조제3항)
- 나. 제5조(사육자의 의무)중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토록 규정된 사항을 「월 2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규정을 구체화함(안 제5조)

다. 제6조(가축사육자에 대한 감독)제1항 중 “사육자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고”로 된 사항을 “1월 이내에 방역소독을 실시할 것을 명하고”로 개선기간 및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6조 제1항)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
- 기예05090-1396(2000. 7. 26.)호 「제7차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심의 결과」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429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중 “유지관리하여”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월 2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여”로 한다.

제6조중제1항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을 “1월 이내에 방역소독을 실시할 것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생략) ②(생략) 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u>유지관리</u> 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상당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사육자의 의무) <u>유지관리하기</u> <u>위하여 월 2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여</u> 가축의.....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제3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받은 자가 제5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u>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u> ②(생략)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은 <u>1월 이내에 방역소독을 실시할 것을</u> ②(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11. 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10월 1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10월 12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76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2000년 10월 31일 상정의결)